

인터넷 규제 쟁점들

2009.4.15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기존 인터넷 규제 정책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 심의
-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
-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임시조치

=> MB 정부의 인터넷 통제 기반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
민주당이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없이, 구글의 실명제 거부를 계기로 실명제 비판을 한 것은
기만적임.

2. MB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 임시조치 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나경원안)
-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나경원안, 형법 개정안)
- 인터넷 상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검색광고의 구분,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 허위사실유포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 정부,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인터넷 탄압 심화
기존 인터넷 규제 정책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개정 추진

3. 각 쟁점별 분석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 현황
 - 공직선거법 상 선거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상 실명제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 의무화

- 2008. 1. 17 구 정보통신부에서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자 공시 :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 (16개),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 (15개),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순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 (6개)

-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53개로 확대(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본인확인제의 범위가 전체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의 62%를 포괄하는 규모에서 90%를 포괄하는 규모로 확대되는 것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부안) : 의무 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문제는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함.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음. 인증의 방법도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다양할 수 있고, 각 방법에 따라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본인확인의 정확성 등에 차이가 있음. 게시판 시스템, 인증 시스템 뿐만 아니라, 댓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으며,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게시판 문화는 크게 달라짐. 예를 들어, 로그인을 하도록 한다면, 댓글을 쓸 때 클릭을 한번 더 하게 하는 것으로도 게시판 활성화 정도가 달라짐. 인터넷에서 실명제 게시판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포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

-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 특히, 인종, 계층, 성, 나이 등에 있어 소수자에 속하는 표현자, 내부 고발자, 혹은 권력에 대한 비판자의 경우에는 익명 하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 없이 소신껏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임.

-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전체 이용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또한 악의적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불법적인 표현인 것은 아님.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커뮤니티들이 존재함. 일부 게시판에서 욕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체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임.

- 불법적인 정보나 표현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며,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4.2)

※ 구글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채택 거부 (2009.4)

○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김

- 미 연방대법원은 1995년 맥킨타이어 대 오하이오 선거관리위원회 사건에서 “익명성은 악의적이거나 보다는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판시하였음. 1996년 조지아 주에서 추진한 ‘인터넷 사찰법(Internet Police Law: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2003년에는 가정용 보안기구 공급업체와 그 모기업이 야후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11명의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소송에서 미 법원은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글이 위험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익명의 게시자는 미 수정헌법에 보장된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음. 미국 대법원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는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임. 물론 익명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터넷실명제처럼 사전에 규제하는 정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강도가 미국보다 강하지만,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익명성을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 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 또한 익명성은 오로지 최초로 개인 데이터가 생성될 때에만 침해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함. 또한 영국의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명확하고 지나치지 않게 수집하도록 하는 원칙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함.

○ 본인확인제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상존함

-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조라는 편의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사람 혹은 악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2006년 초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명의도용 사례

-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에 대한 고유 식별자이며, 평생 불변하는 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임.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대다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쇠 역할을 함으로써, 한번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피해를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함.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영역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은 문제임.

- 신용정보업체 등 다수의 본인확인서비스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실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조

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우려됨.

※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인터넷실명제 쟁점> (2008.8.28)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며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에는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및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임.
-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음.

■ 문제점

○ 불법정보 기준의 불명확성

-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있음.

<1항>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시행령 16조가 모두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 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포르노, 국가기밀누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 인터넷 상 표현이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음.
- 비록 사후심의이지만, 사전검열과 같은 '위축적 효과' 초래.

"행정기관의 위법성 판단은 형식적으로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이 아닌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나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을 제약하는 것은 표현/행동을 구분하여 표현을 더욱 두터이 보호하는 헌법원리상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눈치를 계속 보거나 아예 표현물의 표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사후심에 대해서는 사전제재(prior restraint)

라는 사전검열 보다 더욱 폭넓은 개념에 포함시켜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이런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검열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해야 합니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 관련 사례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해당정보 삭제’ 시정요구

- 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58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

- 심의위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광고주 불매운동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 역시 불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제44조의 7 1항 1호에서 8호까지 열거된 불법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 사례는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임의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08년 7월 16일, 방통심의위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09년 2월 19일, 법원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광고주목록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광고주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

3)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임시조치

3-1) 현행 임시조치의 문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8.6.13]

■ 문제점

○ 인터넷 상의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는 절차 및 판단 주체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점 존재

○ 임시조치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적 검열 문제

-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자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초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임의의 임시조치 제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만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정도의 절차(notice & take down)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음.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및 나경원안은 이 부분 보완

○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절차의 부재

- 최대 30일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 혹은 분쟁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부재.

- 게재자의 이의신청시 분쟁조정은 최종적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되어야 함.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및 나경원안은 이 부분 보완 (정부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함.)

○ 권력자에 의한 임시조치 남용

-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사기관, 정부기관도 포털 사업자에 임시조치 요구 남발

※ 나경원안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활성화

- 문제 : 분쟁조정이 될 때까지 게시물이 임시 차단상태에 있게됨. 임의의 임시조치 존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

3-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부안)

■ 현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임시조치 의무화)

- 분쟁조정절차 규정

■ 문제점

- 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삭제나 임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될 것임.

- 이 조항은 법리적인 모순도 갖고 있음. 같은 조 8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제112조 8항)고 하여, 2항을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님. (따르지 않은 책임은 결국 사업자가 지게되는 것임). 2항은 면책 요건임과 동시에 의무조항으로 모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112조 하단은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하느냐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법리적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

음.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제112조 4, 5, 6항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게시자 사이의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해 놓았음. 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방송 심의를 비롯하여 방대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을 담당할 전문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좀 더 면밀하게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사이버모욕죄

■ 현황

- 2008년 10월 30일 장운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 2008년 11월 3일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 사이버모욕에 대해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문제점

○ ‘모욕’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큼

-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과 단순한 부정적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 수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음

- 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보았고,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지되고 있음

-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음

-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도 처벌이 매우 경미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있음

-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그 밖의 국가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임
-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인 Ambeyi Ligabo은 2008년 2월 발표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명예훼손 법리가 불의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을 가로막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장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이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반의사 불벌죄로 입법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큼

-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이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 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

■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문제점

- 방통심의위는 제21조 4에 의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 외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
- 대다수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대해 수용하고 있는 상황임.
- 행정기구의 성격이 강한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 권한을 통해 사실상 검열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자인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없음.

6) 모니터링 의무화

■ 현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부과

■ 문제점

- ISP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 즉 서비스제공자를 콘텐츠의 '중립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발행자(Publisher/Speaker)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 서비스제공자를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발행자로 보는 것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인지, 또한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형성된 시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ISP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230조), 이는 ISP가 선의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되, ISP를 발행자(publisher)나 발언자(speaker)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중립적 전달자(neutral carrier)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모니터링'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의 범위 역시 모호함. 예를 들어,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모니터링해도 되는 정도의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기계적인 방식의 모니터링도 허용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함.

7) 허위사실유포죄

■ 현황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 2009년 1월 10일, 미네르바 구속

■ 문제점

-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 무엇이 허위인가하는 판단의 어려움
- 자유로운 논쟁에서 잘못된 언급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함.
-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정치,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허위로 인한 사기, 허위의 상표를 부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 등 국가의 자의가 개입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혹은 부당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 뿐

- 1990년대 유엔인권위원회는 튀니지, 모리셔스, 아르메니아, 우루과이, 카메룬 등이 가지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폐지를 권고.
- 2000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
- 2000년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위헌 판결

8) 인터넷 상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 현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 인터넷 상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 정보검색결과 조작금지, 검색광고의 구분,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등

■ 문제점

- 포털 업체의 검색결과 조작 의혹이나 부정 클릭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법적 규제라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나 이용자 운동 등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는지를 포함하여 해결책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상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부른 법적 규제가 오히려 혁신적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이용의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오히려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앞으로도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법적 규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영역은 계속 확대될 것임. 정보검색결과 조작금지 등 이번 개정안에 도입된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정부의 일관된 규제정책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여 부가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 해당 조항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문제임. 법 규정이 모호하면 규제 대상인 사업자와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이 위축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보검색 결과의 '조작'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함. 특정 이슈에 대한 이용자들의 집단적 행동도 '조작'으로 규정되어 규제될 위험성이 있음.

※ 관련 사례 : 3월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의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로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누리꾼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에 영장을 받은 근거 범조항은 '업무방해 혐의'이다.

4. 인터넷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매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이는 인터넷이 가장 민주적인 매체인 근거이지만, 역으로 인터넷 내용규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규제 범위가 넓다.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전문 생산자와 표현물을 '중앙집중적'으로 출판(publish)하는 매체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한다.

○ 인터넷에서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 것 그대로의, 거칠은, 때로는 부정확한, 때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그대로 표출된다. 이는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거친 표현이 모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불법적인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의 경계는 모호하다.) 부정확한 사실의 표현이 모두 유언비어의 유포(를 의도한 것)는 아니다.

○ 사적 공간/공적 공간 :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들에게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 사적 공간인 동시에 공적 공간이다. 메일뿐만 아니라, 예컨대 미니홈피나 커뮤니티와 같이 (가능성 측면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사적인 소통을 한다. 욕설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유통(연예인 A가 B랑 사귀대와 같은)은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의 방식이며, (고운 말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온라인의 어떤 공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소통한다. 물론 이러한 사적인 소통이 특정한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이해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 법적 규제/자율 규제 : 법적 규제는 인터넷 공간을 균질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실명제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 공간은 다양하며, 그만큼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각자 혹은 함께 운영에 관여한다. 각각의 커뮤니티는 각자의 현실에 맞는 운영 원칙과 기술적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예컨대 익명으로 운영되어도 예의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도 있고, 남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성별 확인을 원하는 커뮤니티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내 맘에 안들면 삭제한다"라는 운영 원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 특정 커뮤니티의 운영원칙이 맘에 안들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도 된다. 물론 '불법 표현'에 대한 법의 개입은 불가피하겠지만, 내용 규제 정책은 개별 커뮤니티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반론이나 토론 역시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 내용 규제의 수준이 여타 매체에 비해 낮아져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도 쉽다. 이는 인터넷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 익명성/통제가능성 : 인터넷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이 얼마나 영터리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다고 해도 본인임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또 한편으로 인터넷은 판옵티콘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적은 기록된다. (포털이 가입할 때 받는 개인정보 외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상상해보자. 내 메일, 커뮤니티에 올린 글 목록, 지식인에 올린 글 목록, 쇼핑몰 구매 목록, 가입한 커뮤니티, 친구 관계 목록 등등등) 이에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이 결합되면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내용 규제는 일정하게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엄격한 성인 인증은 일정 수준의 본인 식별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